

## 천안반다비체육센터 지도자 채용 공고

천안반다비체육센터를 선도할 유능하고 성실한 인재를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.

2026년 5월 8일

천안반다비체육센터 인사위원회 위원장

### 1 채용개요

#### ○ 채용구분

응시분야	인원	담당업무
천안반다비체육센터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	1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헬스장 운영 및 안전 관리</li><li>장애인 프로그램 운영 및 지도</li><li>기타 행정 업무</li></ul>

### 2 응시자격 및 가산특전

#### 가. 공통요건 (기준일: 채용 공고일 현재)

- 「천안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 인사규정」 제21조 및 「대한장애인체육회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팀 운영지침」 제8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
- 연령, 성별, 거주지 제한 없음(단, 근무 상한 연령 만 60세를 초과할 수 없음)
- 남성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

## 나. 채용 자격요건

○ 공고일 기준,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

종목	자격요건
보디빌딩	1. [국민체육진흥법] 2급 이상의 전문스포츠지도사자격을 갖춘자 2. [국민체육진흥법] 2급 이상의 생활스포츠지도사자격을 갖춘자 3. [국민체육진흥법] 2급 이상의 유소년스포츠지도사자격을 갖춘자 4. [국민체육진흥법] 2급 이상의 노인스포츠지도사자격을 갖춘자

## 다. 가산 특전

1) 취업지원대상자 및 등록 장애인

구분	가산비율	비고
국가유공자	서류전형 총점의 5%~10%	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
장애인	서류전형 총점의 10%	장애인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

※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항에 따라, 금번 채용(선발예정인원 1명)은 취업지원대상자 **가점을 합격 결정에 적용하지 않습니다.**

다만,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가점을 적용합니다.

2) 가산점은 증빙서류 제출 시, 본인에게 유리한 것 1개만 적용

※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

### ③ 근무조건

- 구 분: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
- 계약기간: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
- 근무시간: 주 5일 근무(주 40시간)
- 보 수
  - 기본급: 월 2,335,000원
  - 수 당: 여비(월100,000원), 활동비(월200,000원), 정액급실비(월140,000원), 특수업무수당(월100,000원), 복지포인트(연300,000원), 명절휴가비(기본급 50%-연 2회), 초과근무수당, 장기근속·자격수당 및 가족수당, 연가보상비(해당자)

## 4

## 채용 방법

## 가. 결정방법

구분	결정방법	비고
1차	○ 응시자격 충족자에 한하여 전원 합격 ※ 「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6호」에 따른 보디빌딩 자격을 취득한자	서류심사
2차	○ 지도 종목 수업 지도계획서 작성 및 발표(50점)	통합 면접심사
3차	○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(50점)	

## 나. 면접심사 항목 및 배점

순	구분	내용	비고
1	직무수행 계획 작성 능력	· 헬스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획 · 종목 및 장애유형을 고려한 수업 설계	25점
2	직무수행계획 발표 능력	· 헬스장 운영에 대한 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· 지도계획 전략 및 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	25점
3	사명감 및 태도	· 지원분야에 대한 열정, 자세 및 태도	10점
4	전문지식	· 특수성 이해 및 관련 지식	10점
5	지도자로서의 자질	· 관련 지도경험 및 업무의 이해도	10점
6	의사발표력	·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	10점
7	창의력 및 적극성	· 창의력, 논리적 사고 및 적극성	10점
합계			100점

## 5 합격자 결정

- 2차(지도계획서: 50점) 및 3차(적성면접평가: 50점)의 성적을 100점 만점으로 합산하여 시험성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
- 동점자가 있는 때에는 다음의 순위에 따라 결정
  1. 2차 시험의 고득점자
  2. 3차 시험의 고득점자
  3. 면접심사위원회의 결정자
- 2차 ~ 3차 시험을 합산한 시험성적이 60점 미만인 자는 불합격 처리
- 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
- 1순위 합격자를 일반채용, 2순위 합격자를 육아휴직 대체자로 배치함을 원칙으로 하되, 응시자의 지원 분야에 따라 달리 배치할 수 있음

## 6 채용 일정

### 가. 채용 일정

구분	채용일정	비고
채용공고	5. 8.(금) ~ 5. 19.(화)	12일간
응시원서 접수	5. 20.(수) ~ 5. 21.(목)	2일간
1차 서류심사	5. 22.(금)	본회 홈페이지
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	5. 22.(금)	
2차 면접심사	5. 26.(화)	본회 홈페이지
최종합격자 발표	5. 27.(수)	
채용신체검사 및 신원조회	5. 28.(목) ~ 5. 29.(금)	
임용	2026. 6. 1.자	

※ 상기 일정은 사무국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

## 7

## 제출서류

구분	제출서류
공통	① 지원서 1부 ② 이력서 1부 ③ 자기소개서 1부 ④ 「국민체육진흥법」에 따른 보디빌딩 자격증 1부 ⑤ 수업지도계획서 1부 ⑥ 주민등록초본 1부(병적사항 포함) ⑦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1부
해당자	① 최종학교 졸업증명서(졸업예정자일 경우 졸업예정 증명서류) 1부 ② 경기실적증명서 1부(대한장애인체육회 회원종목단체 발급용) - 국제·국내 대회 입상실적 포함 ③ 선수등록확인서 1부(대한장애인체육회 회원종목단체 발급용) ④ 장애인 국가대표 증명서 1부(대한장애인체육회 회원종목단체 발급용) ⑤ 기타 가산특전 해당 서류 ⑥ 경력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 ⑦ 기타 자격증 사본 1부
최종합격자	①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② 건강진단서(의료기관발행) 또는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(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) 1부 ③ 징계사실유무 확인서 1부(스포츠윤리센터 발급)

## 8

## 응시원서 접수방법

- 원서교부: 천안시장애인체육회 홈페이지(<https://casad.or.kr/>)  
   「알림마당-채용/입찰」란에서 다운 받아 사용
- 접수기간: 2026. 5. 20.(수) ~ 5. 21.(목) / 18:00(마감시간 도착분 까지)
- 접수방법: 접수기간 내, 이메일, 우편 및 방문접수
  - 접 수 처: 천안반다비체육센터 센터운영팀
  - 이 메 일: [limsboy2@casad.or.kr](mailto:limsboy2@casad.or.kr)
  - 주 소: 천안시 동남구 향교1길 104-38(천안반다비체육센터 3층)
  - 접수시간: 09:00~18:00(점심시간 12:00~13:00 제외)
- 문 의 처: ☎041-522-8014

- 응시지원서 및 제출서류 기재사항 착오, 누락, 허위기재 및 연락불능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.
-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결과 적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종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, 채용신체검사, 증빙서류 허위사실 기재 등 기타 부적합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응시지원서 접수 결과 선발인원에 2배수 미만이거나 응시자가 부적격 할 경우에는 재공고 시행
-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의 경우, 반드시 한글번역본(공증 필) 첨부 제출
-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회 사무국 인사규정 및 인사위원회 해석에 따름
- 각 전형별 합격자 발표는 천안시장장애인체육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고 되므로 전형별 공고문을 정확히 숙지하시기 바라며, 개별 통보는 하지 않습니다.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회 센터운영팀 운영팀장 (041-522-8014)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## 결격사유

### ○ 「천안시장장애인체육회 사무국 인사규정」 제21조(자격제한)에 의한 사항

1. 피성년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- 6의2. 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3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### ○ 「대한장애인체육회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」 운영지침 제12조(채용결격사유)에 의한 사항

1.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11조의5(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)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2.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12조(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)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도자 자격이 정지 또는 취소된 사람
3. 타 체육단체(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2조제9호의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) 재직 시 부패행위, 비위행위 등으로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
4. 타 체육단체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